

「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월 12일
중소기업청장

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- 국무조정실이 '14.12.28(일) 개최한 규제기요턴 「민관합동 회의」 후속 조치로, '탈취기'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공장면적기준 완화
-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규제개혁 요청에 따라, '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'에 대한 직접생산확인기준 중 생산인력 자격증 목록 추가

2. 관련근거

-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
- 동법 시행령 제10조제4항

3. 주요내용

□ '탈취기'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공장면적기준 완화

- 탈취용량에 관계없이 165m²이상을 요구하였던 생산공장 면적기준을 탈취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소형설비를 생산하는 업체에 공공 조달시장 진입기회 확대
- 탈취용량 50m³/min 미만의 소형 탈취기를 제조하는 경우 생산 공장면적기준을 100m²으로 완화하여 적용(현행 기준의 60% 수준)

□ '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'에 대한 생산인력 자격증 목록 추가

- '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'에 대한 직접생산확인기준 중 생산인력 자격증 목록에 '건설기계설비(산업)기사'를 추가
- * 상위 자격인 '건설기계기술사'도 포함

4. 의견제출

「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」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. 2.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

※ 보내실 곳 :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
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
(☎ 042-481-8918, Fax 042-472-7932)

- 붙임 : 1. 신·구 조문 대비표
2. 개정(안) 전문 (금번 개정내용은 붉은색으로 표시)